

중국의 수출입식품관련 법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

중국 출입경검험검역법률법규 (LAWS AND REGULATIONS FOR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1989년 2월 21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 통과, 1989년 2월2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4호로 공포,

1989년 10월1일 효력발생)

제1장 총 칙

제1조 이 법은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을 보증하며, 외국의

무역상대의 법적 권리와 관심을 보호하며, 외국과의 무역과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국무원은 전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가상검국은 산하에 지방국가상검국(이하 지방상검국이라 한다)을 두어 그 관할 지역 내로 수출입되는 상품의 검사를 담당한다.

제3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 또는 국가상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은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본법에 의거한 검사를 수행한다.

제4조 국가상검국은 무역 증진을 위해 지방상검국에서 검사할 대상 상품의

이 글은 중국의 수출입검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에서 관련규정을 발췌·번역한 자료로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중국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홈페이지(<http://www.ciq.gov.cn>)를 참고하시거나 통관항을 관할하는 지방상검국등에 최근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이하 상품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목록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인 수출입 상품은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 또는 국가상검국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어떠한 상품도 판매 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준이 하인 상품은 수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 첫째 문장에서 기술한 수출입 상품이라도 수취인과 화주의 신청에 의해 국가상검국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제6조 지방상검국에서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에는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과 안전 및 위생을 위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포함한다. 관련 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하여 강제규격 또는 검사기준에 준하여 제조한 수출입 상품은 제조시 적용한 강제규격 또는 검사기준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에서 동의한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제7조 수출입상품과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품목은 관련법이나 행정조치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제8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수집한다.

제2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9조 이 법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의 검사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

은 하적항 또는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상검국에 수입 물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통관서류에 지방상검국의 증명여야 있어야 통관이 이루어진다.

제10조 이 법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에 검사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관할 지방상검국이 정한 장소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은 상대 무역국이 정한 기간이내에 검사를 마치며, 검사 증명서를 발부한다.

제11조 이 법에 의한 지방상검국의 검사대상이 아닌 수입상품이 품질 규격 미달, 파손 또는 중량 또는 수량 미달인 경우에는, 수취인은 지방상검국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일부 중요한 수입상품 또는 세트의 크기가 큰 경우, 수취인은 무역계약의 조문에 따라 수출국에서 선적전이나 선적분에 대하여 일차 검사를 해야하는 반면, 관련 부처에서는 그들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필요시 지방상검국은 이와 같은 검사와 감독을 책임 맡는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13조 이 법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의 검사대상이 되는 수출상품의 경우 화주는 지방상검국에서 정한 장소와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다. 지방상검국은 선적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상품목록에 기술된 상품의 경우 세관은 지방상검국에서 발급한 반출 증명서 또는 지방상검국에서 통관절차를 위하여 부착한 봉인을 확인하고 반출시켜야 한다.

제14조 지방상검국에서 검사증명서와 반출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상품은 지방상검국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물 수출품의 포장생산 업체는 지방상검국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험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지방상검국에 포장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에 보관된 위험물의 수출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16조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선박의 홀드 또는 컨테이너의 경우, 선적 전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운반자와 조합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건에 의한 선적이 검사원에 의해 적합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선적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17조 지방상검국은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상품 이외에도 수출입 상품의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다. 무작위 검사 결과 규격에 부적합한 상품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8조 지방상검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 수출 상품의 품질 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원을 상품목록에 기재된 수출 상품

제조공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상검국은 국가상검국과 외국의 담당 기관이 협정 또는 외국 담당 기관의 위탁에 의한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합한 수출입 상품은 품질 증명서를 붙일 수 있다.

제20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수출입 상품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자격이 검증된 국내·외 기구 또는 기관을 수출입상품검사소로 인정한다.

제21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인정 또는 인증된 수출입 상품의 시험 기구 또는 기관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감독하며, 그들에 의하여 검사된 상품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 상품과 그 제조업자에 대하여 품질증명서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국가상검국은 타 관련 부서와 함께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지방상검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통하여 기준이상인 수출입 상품에 검사표시 또는 봉인을 할 수 있다.

제24조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지방상검국의 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원래의 지방상검국, 지방상검국의 상급기관 또는 국가상검국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사 요청이 수락되어진 경우 지방상검국 또는 국가상검국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상검국, 지방상검국으로부터 지정받은 검사기관 및 국가상검국

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은 무역 상대 또는 무역 상대국의 검사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감독과 조사의 범위는 수출입 상품의 품질, 수량, 중량과 포장 조사, 특정 또는 일반적인 선하에 대한 선적 및 하역시의 파손, 수출 상품에 대한 기술적 조건 검사, 용적 톤수의 측정, 원산지 또는 평가 증명서를 포함하는 감독과 조사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 이 법 조항의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입 상품의 검사 신청없이 판매 또는 사용,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검사 신청 없이 수출,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규격 미달인 제품의 수출하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지방상검국은 벌금형을 가한다.

만약 심각한 상황이거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형법 제187조에 따라 적절히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 조사해야 한다.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과 지방상검국의 수출입 상품의 무작위 검사에서 규격미달인 것은 상기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7조 상품 검사증명서, 문서, 봉인, 인장, 표시와 수량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형법 제167조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기

소되며, 만약 그 죄가 가벼우면 당사자는 지방상검국의 벌금형을 받는다.

제28조 지방상검국의 처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칙 부과 기관인 지방상검국, 지방상검국의 상급기관 또는 국가상검국에 재고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벌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상검국은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다.

제29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 공무원 또는 지방상검국, 국가상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거짓 검사 또는 검사와 검사 증명서에 대한 의무를 무시한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형법에 근거한 제재 조치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제6장 부 칙

제30조 이 법에 근거하여 검사, 감독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상검국과 기타 검사기관은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 수준은 국가상검국과 국무원의 타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은 국가상검국에서 작성하며, 국무원에 제출되어 승인되면 시행된다.

제32조 이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28일 국무원에 의하여 설립된 중국 수출입상품의 검

사 규정은 동일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1992년 10월 7일 국무원 비준, 1992년
10월 23일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 발표)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이하 상품검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한다)은 전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조 국가상검국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인 성, 자치구와 직할시를 비롯하여 항구와 수출입 상품 집하장에 있는 수출입상품 검사사무국과 이의 지소(이하 지방상검국이라 한다)는 관할 지역내의 수출입상품의 검사 책임이 있다. 지방상검국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수출입상품의 품질감독 관리와 검사의 책임을 갖는다.

제4조 외국과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상검국은 사회적, 공공의 관심대상인 상품에 대하여 지방상검국에서 검사를 위한 수출입상품 검사강화 목록(이하 상품목록이라 한다)을 작성,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 각 항에 기술된 수출입상품은 국가상검국 또는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법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상품목록에 등재된 상품
- (2) 수출식품의 위생검사
- (3) 위험물의 포장과 용기의 성능과 이용 시험
- (4) 수출목적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식품의 운송 선박 또는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적절성
- (5) 관련 국제협약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실시되는 수출입 검사
-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이 실시하는 수출입 검사

제6조 수출입 약품의 위생검사, 측정기기의 교정, 수출입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안전 검사, 선박(근해 플랫폼, 선박용 주요 기기 포함)과 컨테이너 검사, 항공기 안전과 항공기(엔진과 기기 포함)의 적절성 검사와 원자력 관련 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타 검사기관에서 검사한다.

제7조 지방상검국은 법적 검사대상이 아닌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임의로 검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상검국은 법적 검사대상이 아닌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무역 상대국의 검사증명서 요구 또는 상품의 화주와 수취인의 계약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후 검사 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입상품의 견본, 선물, 무역 거래가 아닌 전시와 기타 무역용이 아닌 물품의 경우 성(State)에서 정하였거나 또는 무역 상대국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품목록에 수재된 상품 품질이 지속적인 검사결과 적합하거나, 지방상검

국에 의하여 인정된 무역상대국 검사 기관의 검사결과 지속적으로 적합한 경우, 해당 수출입상품은 수취인, 화주 또는 제조자의 신청시 국가상검국의 결정 아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입 상품 검사에 대한 예외조항은 국가상검국에서 정한다.

제9조 지방상검국에서 수행하는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을 비롯하여 위생과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제10조 지방상검국은 아래 규격과 절차에 의하여 수출입상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법, 행정조치, 규정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검사 규격과 같은 강제규격에 따라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만약 견본과 다른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의 다른 규정과 더불어 제공된 견본에 따라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검사규격이 외국의 규격·기준보다 낮은 경우 외국의 규격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견본과 다른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의 다른 규정과 더불어 제공된 견본에 따라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검사 규격이 없으며, 외국에도 규격·기준이 없거나 확실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검사는 제조국

의 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또는 국가상검국에서 인정한 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제11조 대외무역과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상검국은 수출입 상품에 적용할 규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상검국 검사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검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원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3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입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하적항 또는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상검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통관서류에 지방상검국에서 부착한 증명이 있어야 통관이 이루어진다.

제14조 무역계약서 또는 선적서류에 검사장소가 기술되어 있는 수입상품의 경우 검사는 반드시 기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하적항, 도착 장소 또는 지방상검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벌크상태의 대형 상품, 변패하기 쉬운 상품 또는 하역하는 도중 파손 또는 수량/중량 부족이 발견된 경우 검사는 하적항 또는 도착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완전한 세트의 장비, 기계, 전기 장비와 측정기, 설치와 함께 검사하여야 하는 설비, 성능 시험 및 개봉 후 재포장이 실효성이 없는 상품의 경우

검사는 수취인이 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의 경우 등록된 수취인은 계약서, 송장, 물품 목록, 입항신고서와 필요한 문서를 기간 내에 지방상검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상검국은 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이 아니라도 외국의 무역 계약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를 신청한 수입식품의 경우, 지방상검국은 청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의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한 상품에 대하여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규격 또는 외국의 무역 계약에 따라 검사인증서가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는 검사인증서를 각기 발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강제 규격 또는 검사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지방상검국의 감독하에 기술적인 처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해야 판매 또는 사용이 허용된다. 기술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 결과 부적합인 상품의 경우 지방상검국은 수취인에게 반송 또는 폐기를 명령한다.

제18조 기술적 처리 후 지방상검국에 의한 재검사를 하여 규격에 적합한

상품은 설치와 작업이 허용된다.

제19조 차량의 경우 수취인은 지방상검국에서 발행한 수입차량 증명서에 의하여 차량관리사무소로부터 번호판을 취득하며, 지방상검국에 번호판의 유효기간 30일전까지 차량의 상태를 보고한다.

제20조 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계약에 의하여 검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은 무작위 검사와 확인 검사를 하며, 수취인의 검사 절차를 감독한다. 검사에 의하여 상품이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청구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수취인은 지방상검국에 검사와 증명서를 신청한다.

제21조 지방상검국에서 무작위 검사 또는 확인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여 배상을 청구한 경우, 수취인은 상품 또는 견본의 충분한 양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 상품이 하역과정에서 파손 또는 수량 부족이 확인되어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항구의 지방상검국에 검사와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역된 제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부 또는 국민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수입 상품 또는 첨단 기술의 고가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외국 무역 계약에 의한 감시하에 초기 검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은 제조와 선적을 감시하여야 하며, 상품의 도착 후에 최종 검사권과 선적 청구권은 계약의 조문에 의하여 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취인은 초기 검사와 제

조자의 제조와 선적을 계약에 의거 감시한다.

수취인의 관리부서는 수입상품의 초기 검사와 선적전에 제조 및 선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상검국은 검사원의 파견 또는 초기 검사와 제조 및 선적에 대한 감시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24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상품의 경우 화주는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를 지방상검국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방상검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은 검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아니나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수출상품의 경우 신청과 검사 절차는 전항과 같다.

제25조 검사를 기 신청한 수출 상품의 경우 지방상검국은 선적에 늦지 않도록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한 수출상품은 증명서 발급 또는 봉인을 하여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조 장소에서 검사가 필요하나, 수출항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수출 상품인 경우 제조 장소의 지방상검국은 기술된 바와 같은 보증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화주는 제한된 기간 내에 항구의 지방상검국 보증서와 관련 문서를 대조검사를 위하여 제출한다. 규격에 적합한 수출 상품은 통관 증명서 또는 봉인을 하여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아닌 수출상품의 경우, 지방상검국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무역부 또는 제조자의 기준을 근거로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 지방상검국의 검사 결과 적합한 수출상품의 경우, 화주는 검사 증명서 또는 통관 통보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선 또는 살아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화주는 명기된 날짜 이내에 선적을 신청하여야 한다. 날짜를 넘긴 화주는 지방상검국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물의 수출을 위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업자는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성능 검사를 지방상검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의 시험 증명서를 획득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만이 위험물의 운송에 이용이 허용된다.

수출을 위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업자는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적용에 관한 허가를 지방상검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상검국의 시험증명서를 획득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만이 위험물의 운송에 이용이 허용된다.

제29조 수출용의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 식품의 운송 선박의 홀드 또는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사 또는 대행업자는 선적전에 청결도, 위생, 냉동효율과 밀폐도 등 상품의 운송에 적합 여부를 지방상검국에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서가 첨부된 선박만이 선적이 허용된다.

제30조 규정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검사 대상인 수출상품의 경우 제25조, 28조 및 29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증명서, 통관 통보 또는 봉인이 있어야 통관이 된다.

제31조 지방상검국의 검사, 확인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상품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4장 수출입 상품의 조사

제32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외국의 무역상대, 국내의 관련자 또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제한된 범위내의 수출입 상품의 조사를 위임받을 수 있고 조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 수출입 상품의 조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수출입 상품의 품질 검사, 품질과 중량 조사, 포장 조사와 중량 평가
- (2) 수출입 상품의 선적과 하역 감독
- (3) 수출입 상품의 적하장 조사, 파손된 화물 검사와 일반 또는 특정 해손(average)에 관련한 화물 검사
- (4) 수출 상품의 선적을 위한 선박, 차량, 항공기와 컨테이너의 적합성 검사
- (5) 수출입 상품의 선적을 위한 부족분 측정, 선박의 홀드 또는 탱크 봉인, 해치 조사
- (6) 컨테이너와 내용물 조사
- (7)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분류, 품질, 수량 및 외국기업의 자산 측면에서의 가치 평가
- (8) 여러 가지 시료의 채취와 봉인
- (9) 검사 또는 조사 증명서의 발행
- (10) 기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조사

제34조 외국 무역 상대의 신청에 따라 지방상검국은 관련 법, 규정 및 행정 조치와 우선권 일반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지방상검국에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의 무역 상대는 계약서, 신용장 또는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감시와 관리

제36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수취인, 화주, 제조업자, 저장업자, 운송업자와 국가상검국 또는 지방상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 또는 검사원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한다.

제37조 국가상검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의 관련 기관과 품질보증협정을 맺을 수 있다. 국가상검국은 관련 협정 또는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수출입 상품을 검사할 수 있다. 증명 절차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출입 상품과 제조업자의 경우 증명 보증서를 발행 받아야 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는 품질 증명 표시 부착이 허용된다. 국가상검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성(State)의 요구에 따라 위생과 안전 관련 수출입 상품과 이의 제조업자의 경우, 수입 상품 위생 허가증과 수출 상품 품질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국가상검국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상검국에 의하여 수입상품 위생

허가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 상품 위생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은 수입할 수 없다.

국가상검국과 국무원의 관련 부처에 의하여 수출상품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상품 위생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은 수출할 수 없다.

제39조 국무원은 수출식품과 이의 제조업자(도살장, 가공공장, 저장창고, 냉장창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는 위생등록·신고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상검국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 조문을 제정한다. 앞서 언급된 수출식품 제조업자는 위생등록과 신고제도의 적용을 국가상검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상검국의 허가 없이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에 등록이 필요한 수출식품 제조업자는 앞의 위생등록과 신고제도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신청을 국가상검국에 한다.

제40조 수출상품 제조업자의 신청 또는 외국 무역 상대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상검국은 제조업자의 품질 보증 제도를 평가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문은 국가상검국이 제정한다.

제41조 수출입 상품의 증명서의 사용이 허용되었거나, 수입 증명허가서, 수출 품질허가서 사용 또는 위생 등록·신고제도에 등록된 수출입 상품의 제조업자가 재검사 결과 지정된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상검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개선을 명령한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증명서 표시의 사용의 취소 또는 지방상검국부허가 사항인 품질 허

가증, 위생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취소된다.

제42조 검사 필요성에 따라, 지방상검국은 법에 의하여 제조 공장에서 발송하기 전에 시험 조건, 제조 조건의 검사와 감독 및 품질관리 제도와 수출상품의 원재료, 최종제품과 부품, 포장, 표시 등의 검사 또는 관리하는 검사원을 수출상품의 제조업자에게 파견할 수 있다.

제43조 지방상검국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상품에 검사를 통한 상품 검사 증명서를 표시에 부착할 수 있으며, 봉인되어야 하는 수출입 상품의 경우 봉인을 할 수 있다. 상품 검사 증명서 표시와 봉인은 국가상검국의 관리를 받는다.

제44조 지방상검국과 지방상검국 또는 국가상검국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상품의 검체를 채취한다. 관련 부처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검사후 검체를 다시 수집할 수 있다. 제한된 기간 이내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검체를 다시 채취하되 실패하는 경우, 앞에 기술한 검사소 또는 검사 기관은 검체를 폐기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지방상검국의 검사원이 제조장소 또는 가공 장소, 항구, 공항, 역, 창고 또는 운송 차량에서 법에 의한 검사, 조사, 감독 또는 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부서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검사 작업의 필요에 따라서 수출입 상품의 검사 또는 지정된 상품의 품질 허가증과 증명서 시험과 인정된 제조

업자의 시험을 위하여 국내·외 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정된 검사기관을 재검사하였을 때 약정된 필요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국가상검국과 지방상검국은 지정된 사항을 취소한다.

제47조 지방상검국은 필요한 경우 검사와 평가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검사 직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중국내에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은 국가상검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의 검사와 조사 사업이 허용되며, 상품검사와 지방상검국의 관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수출입 상품의 검사 결과에 검사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의 지방상검국의 상급기관 또는 국가상검국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원래의 검사국 또는 기타 검사국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재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상검국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상검국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며, 이 결과는 최종이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0조 다음에 기술된 행위를 하여 상품검험법 또는 이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회람, 경고 또는 검사 신청의 취소를 통한 제재를 하며,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총 수출입 상품 가격의 1 내지 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법 또는 관련 규정, 행정조치에 의하여 수입 상품 검사대상이나 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사용, 관련법에 의한 수출시 검사 대상이나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출한 경우
- (2) 수입 위생 허가제도, 수출 위생 허가제도 또는 위생등록·신고제도에 해당하는 수출입 상품을 관련 허가증 없이 수입, 판매, 사용한 경우
- (3)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식품의 운송에 부적합하거나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홀드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 (4) 지방상검국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위험물의 수출을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5) 기타 지방상검국의 강제 검사 대상을 회피한 경우

제51조 다음에 기술된 행위를 하여 상품검험법 또는 이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회람, 경고 또는 검사 신청의 취소를 통한 제재를 하며,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총 수출입 상품 가격의 5 내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지방상검국의 검사 결과 강제 규격 또는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

매 또는 사용한 경우

- (2) 지방상검국의 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3) 허가 없이 지방상검국에서 검사한 수출 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무게와 포장을 변경시키거나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채취된 검체를 임의로 바꾼 경우
- (4) 지방상검국에 의하여 포장 또는 상품에 부착된 상품 검사 표시, 봉인과 검사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손상시킨 경우
- (5) 지방상검국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위험물의 수출을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6) 실제와 다르게 지방상검국에 검사를 신청하고, 불성실한 방법으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제52조 검사를 신청한 수출 제품의 품질이 저급한 경우, 지방상검국 또는 관련 기관과 관계된 검사소는 생산업자와 무역기구에 제조와 수출의 중지를 명령하고, 감독하에 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폐기하며, 이와 함께 또는 따로 수출 상품의 가격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제50, 51 내지 52조에 기술된 위반을 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형법에 의하여 제소된다.

제54조 상품 검사 증명서 또는 문서, 봉인, 인장 표시, 품질 증명서 표시를 변조, 허위제조 또는 불법사용한 자

와 상품 검사 증명서 또는 문서와 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한 자가 증명서를 수출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0에서 30,000 RMB 유안(yuan)의 벌금을 부과하며, 수출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상품가격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가 범법의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하여 기소된다.

제55조 국가상검국 또는 인정된 검사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정당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국가상검국은 상품 검사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벌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방상검국으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벌금은 재정부에 귀속한다.

제57조 지방상검국이 부과한 벌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부과한 지방상검국 또는 상위의 검사기관에 재고를 신청할 수 있다. 재고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고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이내에 재고 신청 또는 법정 소송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상검국은 법원에 강제집행 소송을 낸다.

제58조 권력의 남용, 독직, 횡령, 의무 불이행과 검사기간을 어긴 국가상검국 또는 지방상검국은 상위의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형사법에 의하여

기소된다.

국가상검국 또는 지방상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 기관의 검사원 또는 지정 받은 검사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기한 조문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7장 부 칙

제59조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지방상검국이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수행한다.

제60조 국가상검국은 본 실시조례를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61조 본 실시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1995년 10월30일 제8차 국가인민회의 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되고, 1995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59번 법령으로 공포)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이 법은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오염물이나 위해 물질로 인한 건강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국가가 식품위생감독 체계를 구성한다.

제3조 국무원산하 위생부(Administrative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전 국가의 식품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산하 다른 부처들은 부

처의 해당기능과 임무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 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기,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식품생산과 관련한 건물, 설비 및 환경에도 적용된다.

제5조 국가는 식품위생관련 공공기관과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 감시감독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누구나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기관에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식품위생

제6조 식품은 무독, 무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영양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색깔, 향기, 맛과 같은 적당한 관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7조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주식 또는 보충식은 국무원 위생부에 의해 공포된 영양 및 위생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식품생산 및 판매과정은 다음의 위생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식품 생산 및 판매 시설의 내·외부 환경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파리나 쥐, 바퀴벌레, 해충의 제거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들의 번식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유독하거나 해로운 장소로부터는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소는 원재료의 준비나 취급 제품의 종류

나 양에 적합한 포장과 저장을 위한 작업 장소나 건물을 갖춰야 한다.

- 3) 살균, 탈의, 화장실, 자연광/인공조명, 환기, 부패방지, 먼지방지, 파리와 설치류의 제거, 세척, 폐기물 처리, 쓰레기 등의 오염억제를 위한 적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 4) 설비의 배치와 공정 배치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가공될 식품과 바로 먹을 수 있는(ready-to-eat) 식품간에, 그리고 원재료와 최종제품간에 오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은 어떤 독성 물질이나 오염물에 접촉할 수 있도록 방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식탁 및 주방기구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위한 용기 등은 깨끗해야 하며 사용 전 소독되어야 한다. 조리 및 기타 용기들은 사용 후 세척되어야 하며 깨끗이 보관되어야 한다.
- 6) 식품의 저장, 운반, 선적, 하역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기들 그리고 이들 작업이 행해지는 환경조건은 안전하고 해가 없어야 하며, 식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 7) 직접섭취 식품은 작은 용기나 무독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 8)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손을 완전히 씻고, 조리하거나 판매할 때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의 착용, 개인 위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국가위생기준의 음용수이어야 한다.

10) 사용되는 세제나 소독제는 인체의 건강에 안전하고 무해하여야 한다.

식품 가판대에서 행해지는 식품의 생산, 판매 그리고 농촌 및 도시 시장에서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 요구사항은 중앙정부 직속의 각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당국의 인민대표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된다.

제9조 다음의 식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된다.

- 1) 부패하거나 변질되고 유지에 의해 변패되고, 곰팡이가 피었거나 곤충벌레가 번식하거나 오염되었거나, 이 물질을 함유하였거나 관능적인 이상 특성을 보이는 식품
- 2)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들에 오염되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
- 3) 국가에서 정한 허용치 이상의 병원성 기생충, 미생물 또는 미생물독소 함유 식품
- 4) 수의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식육 및 식육제품
- 5) 질병, 독극물 또는 다른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한 가금류, 야생동물, 가축 또는 해양 동물과 이들로 만든 제품
- 6) 더럽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용기나 포장 또는 손상된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오염된 식품
- 7) 오염 또는 허위 상표를 붙여 영양

이나 건강을 손상시키는 식품

- 8) 식용이 아닌 물질로 가공된 식품, 식용이 아닌 화학물질 또는 식용이 아닌 물질과 혼합된 식품
- 9) 품질보장 기일이 지난 식품
- 10) 국무원 산하 위생부나 중앙정부 산하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의 인민정부가 질병 예방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특별히 판매를 금지한 식품
- 11) 국무원 산하 위생부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거나,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식품
- 12) 식품위생 기준과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타 식품

제10조 전통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지거나, 원재료, 양념 또는 영양강화제로서 사용된 것을 제외한 식품은 의약품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식품첨가물의 위생

제11조 식품첨가물의 생산, 판매, 사용은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위생기준 및 위생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생기준과 위생관리규정을 따르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

제4장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 기기 위생

제12조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는 위생기준과 위생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 기구의 원재료는 위생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최종제품은 쉽게 세척되거나 소독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식품위생 기준과 식품위생 관리 규정의 설정

제14조 국무원 산하 위생부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 포장, 도구, 기기 그리고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용기를 세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제나 소독제, 식품 오염물질과 식품의 방사능 물질 허용치에 대한 국가위생기준, 위생관리규정, 검사과정을 설정하거나 승인하여 공포한다.

제15조 만약 국가가 특정식품에 대하여 위생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직속의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정부가 지역 위생기준을 설정하고 국무원 산하 위생부와 국가질량기술 감독국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품질 기준을 포함하는 보건과학분야의 주요 규정은 국무원 산하 위생부에 의해 심사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농약, 비료와 같은 농업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안전 승인은 국무원 산하 위생부가 검사, 승인하여야 한다.

도살된 가축과 가금류에 대한 수의위생 검사 절차는 국무원 산하 위생부와 관련된 행정부처에 의해 공동으로 설정된다.

제6장 식품위생 관리

제17조 식품생산 및 판매 관리를 담당

하는 각 단계별 인민정부 부처들은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이 법의 수행을 감독한다. 각 단계별 인민정부는 식품위생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한다.

제18조 식품생산 및 판매 기업은 그들이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를 향상시키고 식품위생관리담당 전담 또는 시간제 종사자를 고용하며 식품위생감시를 강화한다.

제19조 식품생산 및 판매기업의 장소 선정, 건축 디자인, 확장, 개축은 위생요구사항에 부응하여야 하며, 위생부는 동 디자인 검사에 참여하고 최종건물의 검사, 승인에 참여한다.

제20조 새로운 원재료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들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업체는 위생과 영양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원재료나 가공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종류의 기구 및 용기·포장 또는 기기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들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위생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한 제품의 생산 가동 전에 제품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정해진 식품위생기준 검사, 승인 과정에 따라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표준화된 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각 제품들의 요구조건에 따라 제품명, 제조장소, 공장명, 제조일, 배치번호(코드번호), 특기사항, 배합비율(주원료), 품질유지기한 또는 사용법이나 기타 정보를 포장이나 제품

표지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식품포장의 표시는 명확하게 인쇄되고 읽기 쉬워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특정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은 그 제품과 기술한 내용이 국무원 산하 위생부에 제출되어 감사, 승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위생기준 생산, 판매, 관리조치는 상기한 위생부에서 정한다.

제23조 특정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은 인체의 건강에 무해해야 한다. 제품에 기술된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과 재료는 제품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허위 정보가 없어야 한다.

제24조 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이들의 기구 및 용기·포장들은 생산자가 검사를 실시해 위생기준과 위생관리규정에 따라 기준 이상임이 밝혀졌을 때만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판매될 수 있다.

제25조 식품 생산업자나 판매자가 식품 등을 공급받을 때마다 관련 성(State)법률에 따라 검사증명서나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며, 공급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식품의 범위와 종류는 중앙정부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 위생부에서 정한다.

제26조 식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동 분야에 새로 고용된 사람이나 임시직인 경우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설사,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소화기 전염병(병원균 보균자 포함), 활동성 결핵, 고름형 또는 분비형 피부 질환 또는 기타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먹는(ready-to-eat) 식품과 접촉하는 일에는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 식품 생산이나 판매에 종사하는 업소들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위생부가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업은 식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 생산 및 판매자는 위생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대여할 수 없다. 위생허가증 교부와 관리는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의 인민정부 위생부가 수행한다.

제28조 각종 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점의 위생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상점 내에 필요한 공중위생 시설을 설치하며, 양호한 위생환경을 유지한다.

제29조 공상행정관리국은 농촌 및 도시 상점의 식품위생에 관리책임이 있으며, 위생부는 식품위생의 감시와 감독에 책임이 있다.

제30조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이들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기들은 국가위생기준과 위생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수입품들은 수입식품의 위생감독 검사를 맡고있는 국경검사국의 위생 감시감독을 받는다. 검사를 통해 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제품만이 반입될 수 있다. 세관은 검사증명서에 의거하여 제품의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수입 제품의 검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 식품첨가물, 훈증제 그리고 기타 물질에 대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 문장에 언급된 수입품들은 국가위생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에 대한 국가위생기준이 없는 경우의 제품 수입자는 수출국의 보건당기관이 제공하는 위생평가자료를 수입식품 감독·검사 관할 국경검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들은 국무원 산하 위생부에 승인을 위하여 보고된다.

제31조 수출식품은 수출입 상품 국가상검국에 의해 위생 감독과 검사를 받는다. 세관은 국가상검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확인하고 수출상품의 수출을 허용한다.

제7장 식품위생 감시

제32조 지방인민정부 또는 군 이상 수준의 위생부는 법률이 정하는 관할구역 내의 식품위생감독에 대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

철도교통행정주관부에 의해 설립된 식품위생감시국은 국무원 산하 위생부와 국무원 산하 기타 다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정된 식품위생감시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식품위생감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식품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그리고 기술지도 제공
- 2) 식품생산 및 판매 종사자에 대한

훈련에 기여하고 이들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감시

- 3) 식품위생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여 식품위생의 현 상황을 알림
- 4) 생산 또는 판매 기업의 건축, 확장, 개축과 관련한 장소 및 디자인의 위생검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의 검사와 승인에 참여
- 5) 식중독이나 식품오염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관리조치를 취함
- 6) 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감독하고 감시활동을 수행
- 7)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책임성 조사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행정처벌을 부과
- 8) 식품위생 감독에 관련한 기타 문제들을 수행

제34조 인민정부 또는 군 이상 수준의 위생부는 식품위생감시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 감시원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상급 위생부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철도교통행정주관부에 의해 지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은 상급 담당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제35조 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부에 의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명정대하게 법률을 수행하고, 임무에 충실하며 그들의 임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식품 생산자나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며, 그들을 검사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 시설에 출입하며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숨길 수 없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생산자나 판매자가 제공한 기술적 자료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공무원 산하 위생부와 중앙정부 산하 주, 자치지역, 시 지역의 인민정부 위생부는 필요시 적정한 식품위생 단체(units)를 지정할 수 있다. 각 단체는 식품위생감시업무를 수행하고 감시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7조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거나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있을 때, 지방인민정부나 군 이상의 위생부는 식품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시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식중독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의 봉인
- 2) 오염된 식품·기구를 봉인하고 식품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세척 및 소독을 명함

검사 후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식품은 폐기시키며, 반면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식품은 봉인을 해제한다.

제38조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던 곳이나 환자에게 의료처치를 받게 한 단체들은 구조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지역위생부에 신속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인민정부 또는 군 이상의 위생부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 즉시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수행, 처리하며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39조 이 법을 위반하여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식품오염이나 식인성 세균에 의해 질병을 일으킨 사람은 해당 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식품오염이나 질병 유발 식품은 폐기된다. 불법이득은 압류되며, 불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1,000유안이상에서 5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을 생산·판매하여 심각한 식중독이나 식인성 세균에 의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또는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비식품성 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판매한 자는 법에 따라 범죄의 책임을 조사받게 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는 위생허가가 취소된다.

제40조 이 법을 위반하여 위생허가없이 또는 위조된 위생허가증을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판매한 자는 식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불법이득은 압류되며 동시에 불법이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500유안이상 1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1조 이 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업자나 판매자가 위생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징계경고를 받고 5,000유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 시정 요구사항이

거절되거나 다른 심각한 상황이 관련되면 위생허가증은 취소된다.

제42조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그 식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해 정지명령을 받게되고, 즉시 공표되어 이미 판매된 식품은 회수되며, 그 식품은 폐기된다. 불법이득은 압류되며 동시에 불법이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1,000유안이상 5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위반정도가 심각하면 위반자의 위생허가는 취소된다.

제43조 이 법을 위반하여 영양과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나 미취학아동용 주식 및 보조식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들 식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중지명령을 받게 되며 판매된 식품의 회수를 위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가 이뤄지며 그 식품은 폐기된다. 불법이득은 압류되며 동시에 불법이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1,000유안이상 5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위반정도가 심각하면 위반자의 위생허가는 취소된다.

제44조 이 법을 위반하여 위생기준과 위생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기기 그리고 세제와 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이의 생산 및 사용금지 명령을 받는다. 불법이득은 압류되며 동시에 불법이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5,000유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5조 이 법을 위반하여 공무원 산하 위생부의 검사와 승인이 없이 특정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또는 그 제품표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게 되며, 불법이득은 압류되고 동시에 불법이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이득이 없다면 1,000유안이상 5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위반정도가 심각하면 위반자의 위생허가는 취소된다.

제46조 이 법을 위반하여 표준 포장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포장 표시에 또는 제품기술서에 제품의 제조일과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자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동시에 500유안이상 10,000유안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7조 식품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위생허가의 취득 없이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종사하거나, 질병에 걸려 바로 먹는 식품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종사자가 규정에 따라 다른 장소로 배치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5,000유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8조 이 법을 위반하여 식중독이나 식인성 세균에 의한 질병발생 또는 이 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보상 책임을 진다.

제49조 이 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지방

인민정부나 군 지역 이상의 위생부가 결정한다. 이 법에 따라 식품위생 감시권을 가지는 다른 기관들은 명시된 기능과 임무의 영역 내에서 법 조항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50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한 단계 상위기관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또한 처벌통지서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재고기관은 재고신청서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재고결정을 내린다. 만약, 관련 당사자가 재고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고결정 통보서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해진 기일내에 재고를 요청하지도,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또는 행정처벌결정에 따르지도 않으면 결정기관은 인민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만약 위생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위생허가증을 발행하면, 그 위반사항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뇌물을 수수한 자는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 받게 된다.

제52조 권력을 남용 또는 책무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비행에 관여하여 범죄가 되는 주요한 사고를 일으킨 식품위생감시원과 행정담당자는 법에 따라 범죄책임조사를 받게 된다. 위반사항이 범죄가 되지 않으면 위반자는 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는다.

제53조 식품위생감시원과 행정담당자가 법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이나 협박으로 가로막는 자는 법에 따라 범죄책임 조사를 받는다. 무력이나 협박이 없이 식품위생감시원과 행정담당자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자는 치안관리 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치안담당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제9장 부 칙

제54조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제공되는 최종 제품이나 식품원료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쓰이던 제품들을 의미하며, 의약품 목적으로만 쓰이던 제품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첨가되어 식품의 품질, 색, 향기나 맛을 증가시키거나 식품의 저장 또는 가공을 위해 첨가되는 합성물질 또는 천연물질을 의미한다.

“식품강화제”란 식품에 첨가되어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는 천연영양소 범주에 속하는 천연 또는 합성 식품첨가물을 의미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와 포장”은 식품을 싸거나 담기 위해 사용하는 종이, 대나무, 나무, 금속, 에나멜류, 자기류,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합성섬유, 유리를 포함한 여러 재료로 만든 제품들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페인트나 코팅을 의미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와 기기”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관, 운송벨트, 용기, 기구, 식탁용 식기류를 포함한 기구를 의미한다.

“식품의 생산 또는 판매”는 식품생산의 모든 공정(재배와 번식은 제외)과 식품의 수집, 구매, 가공, 저장, 운송, 진열, 공급, 판매와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식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근로자 식당과 식품노점상을 포함해 식품생산이나 판매에 관계된 모든 단체나 개인을 의미한다.

제55조 수출용 식품에 대한 행정조치는 국가상검국이 국무원 산하 위생부와 관련 행정부와 협력하여 별도로 구성된다.

제56조 군대용으로 특별히 사용,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조치는 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해 설정된다.

제57조 이 법은 공포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시험시행)은 같은 날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의 식품수출을 위한 규정 (REGULATIONS OF FOOD FOR EXPORT FROM CHINA)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 창고 위생등록 규정

1994년 11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진출상품검험국 공포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임시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식품위생 규정(임시시행)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국가는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을 위한 공장 또는 창고의 위생등록과 신고의 이행을 관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을 위한 공장 또는 창고(이하 수출식품 공장/창고라 한다)는 위생등록 또는 신고(list entry)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만 식품 수출을 위한 제조, 가공 또는 저장을 할 수 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한다)은 전국의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관장한다.

중앙정부 아래의 각 성,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할시에 설치된 지방상검국은 직접 관할 지역의 위생등록과 신고를 관장한다.

제4조 다음의 공장과 창고는 위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통조림, 음료, 가금과 기타식육 및 그 가공품, 활어를 제외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 급속냉동식품, 낙농제품, 난류, 벌꿀과 그 가공품, 건조식품, 설탕 함유 소맥분, 설탕, 다류 및 카제인을 수출하기 위해 제조 또는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

기타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위생관리를 받기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위생등록 신청

제5조 위생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장/창고는 “수출식품 공장/창고 위생요건(이하 위생요건이라 한다)”에 기초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세워야 하며, “수출식품 공장/창고 위생기준(이하 위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수출을 위한 제조전에 위생등록 신청서(3부)를 작성하여 지방상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식품 공장/창고와 관련된 품질관리 매뉴얼, 공장/창고 지역도, 제조공정도 및 기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지방상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생등록 감사 및 등록증 교부

제8조 지방상검국 감사관 2~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수출식품 공장/창고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관의 자격은 국가상검국이 제정한 “수출입상품제조업소에 대한 품질관리감사관의 운용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전 검토 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위한 일정, 항목,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감사원은 검사 일정을 공장/창고의 직원과 함께 15일 이내에 정한다. 요건에 부적합한 공장/창고에게 15일 이내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공장/창고는 한달 이내로 개선 및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감사의 목적, 근거, 범위, 방법 등은 수출식품 공장/창고 관계자에게 통보되며, 감사관의 감사기간 중 식품수출 공장/창고 관계자는 신청조건을 감사관에게 설명한다.

제10조 감사는 질의응답, 기록검토, 위생요건과 규정에 근거한 현장 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한다. 결과는 감사를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제11조 감사반은 문제점에 대한 특정 기간내에 개선에 대한 제안 의견과 함께 감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자는 주어진 기간내에 개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상검국은 감사반의 보고서 및 감사 기록과 신청자의 개선보고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감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게는 코드번호가 기재된 위생등록증을 발부한다. 등록이 거부된 공장/창고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등록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4장 등록된 공장/창고의 감독과 관리

제13조 지방상검국은 관할지역의 등록된 수출식품 공장/창고(이하 등록된 공장/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한다.

- (i) 등록된 공장/창고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검사하기 위한 직원 파견
- (ii) 수출과 관련된 가공 및 제조 공정중 위생관리 이행 검사
- (iii) 품질검사 및 위생검사 기록 검사
- (iv) 제품품질의 무작위검사 등

제14조 등록된 공장/창고에 대한 지방상검국의 관리, 감독시 위생요건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장/창고는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토록 문서로써 지시한다.

위반정도에 따라 지방상검국은 다음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 (i) 경고
- (ii) 신청중지
- (iii) 제조정지 및 시정지시
- (iv) 등록취소

등록 취소의 경우 기록관리를 위하여 국가상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공장/창고는 행정조치를 통보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생등록증은 3년간 유효하다. 등록증의 재검사 및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성 관할 지방상검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검사 신청을 규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출식품의 제조, 가공 및 저장행위는 정지되고 등록증은 지방상검국이 취소한 코드번호와 함께 회수된다.

이상의 조치는 자료관리를 위하여 국가상검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생등록증과 코드번호의 변경/삭제, 이전, 대여 또는 대체에 의한 허위 사용과 위조는 금지한다. 지방상검국은 위반자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국가상검국은 여러 지역에 걸친 등록업무의 관리, 감독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등록된 공장/창고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무작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9조 등록된 공장/창고주는 감사결과나 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등록된 공장/창고가 있는 지역 이외의 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열 또는 합작공장/창고는 별도로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21조 식품수출을 위하여 해외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장/창고의 경우 먼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수출 제조기업의 해외위생등록에 관한 행정명령(Administrative Rules on Overseas Sanitation Registration for the Manufacture Enterprises of Food for Export)”의 요건하에 취급되어야 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 및 창고 위생요건

1994년 11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 제정

제1조 이 요건들은 수출입상품검험법, 식품위생법(임시시행), 수출입상품검험법시행령, 수출식품위생의 관련 규정(임시시행)에 따라 식품위생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출식품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위생등록을 신청하려는 수출식품 관련 제조, 가공 또는 저장하는 공장/창고(이하 수출식품 공장/창고라 한다)는 수출식품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도할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요건들은 수출식품 공장/창고가 식품위생 품질관리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제4조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식품위생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 4.1 위생관리 정책 및 목표
- 4.2 조직과 책임
- 4.3 가공업자와 검사자 관리
- 4.4 환경위생요건
- 4.5 작업장 및 설비의 위생요건
- 4.6 원재료 및 부재료의 위생관리
- 4.7 생산과정의 위생관리
- 4.8 포장,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 4.9 검사요건
- 4.10 품질관리 기록
- 4.11 내부품질감사제도

제5조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식품위생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책임을 규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제품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책임질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관련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식품 가

공업자와 검사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7.1 가공업자와 검사자는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자격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배치받을 수 있다.
- 7.2 가공업자와 검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 검진을 받는다. 신규직원은 업무배치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7.3 식품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식품생산에 종사할 수 없다.
- 7.4 가공업자와 검사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과 관련 없는 어떠한 물품도 작업장에 반입되어서는 아니된다. 작업시간 중 보석/시계를 착용하거나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원들은 손을 세척·소독하고 위생복·모자·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벗어야 한다.

제8조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다음의 환경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8.1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식품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제품이 공장/창고 지역에서 관리, 생산 또는 저장되어서는 아니된다.
- 8.2 공장/창고 지역의 도로 표면은 평평하여야 하며, 침수되어서는 아니된다. 주위는 녹색식물이 심

어져 있어야 한다.

- 8.3 공장/창고 지역의 세면장은 수세 및 세척 시설을 갖추고 파리, 곤충, 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벽면 하부는 청결을 유지하고 밝은 색으로 칠해야 하며, 부드러우며 평면으로서 침수와 부식이 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8.4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폐기물은 성(State)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8.5 생산능력에 합당한 보조시설은 위생조건에 맞추어 원재료와 포장재를 저장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8.6 생산지역은 거주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 작업장은 다음의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9.1 작업장 지역은 적정하게 배치되고 배수시설을 갖추며,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고 치밀하고 침수와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침수되지 않도록 평평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출구, 배수와 환기지역은 외부로부터 쥐, 파리 기타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2 작업장의 천장과 내부벽은 페인트칠을 하고 무독성, 방수 및 항곰팡이성 물질로 시공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표면이 쉽게 벗겨져서는 아니된다. 벽, 바닥과 천장 사이의 구석은 어느 정도

곡면이어야 한다.

- 9.3 벽과 창살의 접속부분은 약 45도 경사져야 한다. 문과 창문은 밝은 색으로 매끄럽고 평면이며, 청소가 용이하고 침수와 부식저항성이 있고 치밀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9.4 작업장내 생산라인 위에 있는 조명기구는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작업과 검사지역의 조명도는 가공물질의 원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과 검사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9.5 작업장은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 9.6 작업장의 물, 증기, 전력 공급은 생산목표에 맞게 공급되어야 한다.
- 9.7 손, 기구, 장비를 닦고 소독하고 건조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수도꼭지는 손으로 작동되어서는 아니된다.
- 9.8 가공조건에 따라 덧신, 신발, 트럭바퀴에 의한 감염방지 설비가 작업장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 9.9 탈의실, 세면실, 샤워실은 생산요건에 따라 작업장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 9.10 작업장내에 사용되는 작업대, 컨베이어, 기구, 카트 등은 쉽게 청소되고 소독할 수 있도록 무독성이며 부식과 녹 방지가 되고 치밀한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식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다음의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0.1 식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검사 또는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산을 위하여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증명되어야 한다.
- 10.2 식품생산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식품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10.3 가공 및 생산용 용수(얼음)는 성(State)의 음용수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년에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을 사용하기 위한 자가공급용 설비가 있는 경우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은 안전위생 원칙에 따라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1.1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과정에 대하여 운영원칙을 세워야 하며,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11.2 부적합한 제품은 원인을 분석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 시정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 11.3 생산설비는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청결·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11.4 작업대, 가공설비, 기구·용기의 세척 및 소독 체계는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 식품용기는 마루바닥과 직접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11.5 원재료, 반가공품, 완제품, 조리된 식품 및 조리가 안된 식품은

분리되어 보관·저장되어야 하며, 쓰레기는 알기 쉬운 표시를 부착한 특수 용기에 넣어 적절히 버려져야 한다. 쓰레기 용기와 운송설비는 적절한 시기에 소독되어야 한다.

- 11.6 부적합 제품과 바닥에 떨어진 제품은 특정 장소에 분리하여 수집하고 감독자의 감독하에 적절히 버려져야 한다.
- 11.7 작업 전·후에 청소와 위생조치를 하고 특정 직원이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장·저장·운송시 위생관리체계가 설정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12.1 모든 식품의 포장재료는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이 유지되고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2.2 포장실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내·외 포장물질은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 12.3 식품운송 설비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냉동식품은 청결하고 이취가 차단되는 냉장차량(또는 용기)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 12.4 예비냉각실, 급속냉동실, 냉장창고, 저장고는 기술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온도계, 습도계 및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실내는 깨끗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곰팡이, 쥐 및 기타 곤충이 없어야 한다. 실 내에 있는 물질들은 벽과 바닥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쉼니에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종류의 식품들은 교차 감염이나 상호 냄새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실내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제품의 위생검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3.1 생산능력에 상응하는 독립 검사부서가 있어야 하며, 검사·검역에 능력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13.2 검사부서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동 시설과 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오차교정을 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13.3 원재료, 부재료, 반가공품, 완전 가공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규정이 설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13.4 부적합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표시, 기록, 평가, 별도 작업과 내용물 추적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3.5 검사기록은 완전·정확·표준화 되어야 한다.

제14조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품질관리 기록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4.1 마크, 수집, 카다로그, 편집물,

공문서, 안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품 위생의 속성과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14.2 모든 품질관리 기록은 믿을 수 있고 정확하며, 깨끗·명확하여야 한다.

제15조 내부품질감시 체계가 수출식품 공장/창고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품질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검국은 이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수출용 식품을 생산·저장하는 공장/창고의 위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위생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이 요건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요건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본 책자에 사용된 기관 설명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약칭 : 국가상검국), 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國家商檢局) State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State Administration of Commodity Inspection)

⇒ '98년에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으로 변경되었음

State Administration for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CIQ)

: 이전의 중국위생부 검역국(CHF), 농업부 동식물검역국(CAPQ) 및 중국진출구상품검험국(CCIB)을 통합하여 출입국 때의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 감정, 인증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함